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15
----------	-------

발의연월일 : 2026. 5. 11.

발 의 자 : 엄태영 · 유상범 · 박덕흠
서천호 · 고동진 · 강명구
조지연 · 이만희 · 김상훈
김은혜 · 김태호 · 진종오
의원 (12인)

제안이유

단양 곡계굴사건은 1951년 1월 20일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위치한 곡계굴과 영춘면 하리 및 용진리 일대에서 피난 중이던 수백명의 민간인이 미군 전투폭격기 등에 의한 공중공격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약 2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167명의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진실규명을 한 바 있음.

그러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희생자 결정 및 그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그 명

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단양 곡계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 다.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6조).
- 라.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위원회 업무의 심의·의결을 완료하되, 이 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8조).
- 마.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안 제12조).

바.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국가는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추모사업 및 국제 교류협력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26조).

아.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4조).

자. 국가는 단양 곡계굴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재단을 설립함(안 제36조).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단양 곡계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양 곡계굴사건”이란 1951년 1월 20일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위치한 곡계굴과 영춘면 하리 및 용진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 등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단양 곡계굴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하여 단양 곡계굴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

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단양 곡계굴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며, 곡계굴사건을 교훈으로 평화와 인권 가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위령탑 건립 등 추모사업 및 국제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4. 단양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6.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사항
7.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8.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업무 중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둔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의 신청접수와 조사에 관한 사항
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실종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6.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7.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00000호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0000년 0월 0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의 단양 곡계굴사건 관련 피해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심의·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지급,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실종선고의 청구,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희생자, 증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단양 곡계굴사건이 발생한 현장조사를 포함한다) 등을 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주민등록자료·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

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처우 금지) 누구든지 단양 곡계굴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 9천만원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② 후유장애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가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⑥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실무위원회에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신청은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상금등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심의·의결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의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관련 증빙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결정서 송달) ① 실무위원회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제17조(재심의) ① 제4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20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전치주의) ① 제4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은 단양 곡계굴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단양 곡계굴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차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단양 곡계굴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3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상금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24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25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단양 곡계굴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단양 곡계굴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국가는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추모사업 및 국제 교류협력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6·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제적부가 소실되어 단양 곡계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28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민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 정한 특례 이외에 실종의 신고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른다.

제29조(인지청구 등의 특례) ① 단양 곡계굴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4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8조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혼인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같다)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민법」 제812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31조(입양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민법」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및 제874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날로 소급하여 그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⑤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희생자의 양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7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 및 입양신고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2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각각 제4조제2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 또는 처리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3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희생자·유족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심리상담 등 지원) ①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리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 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추모사업 등) 국가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모 행사의 거행
2. 위령탑 건립
3. 그 밖의 단양 곡계굴사건 관련 추모 사업

제36조(추모재단 설립) ① 국가는 단양 곡계굴사건을 추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양 곡계굴사건 추모재단(이하 “추모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추모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추모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추모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단양 곡계굴사건 추모관 운영

2. 단양 곡계굴사건 추모사업

3.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⑤ 국가는 단양 곡계굴사건 추모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추모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토지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모재단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추모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사람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 ②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명·위촉 및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